

## 대덕구 경력단절여성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

### <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>

항목	세항목	편성기준
초기 사업비	직접 사업비 (70%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창업에 필요한 실비</li> <li>- 인건비, 재료비, 임차비, 외주용역비 등</li> <li>- 창업인테리어 비용(1천만원 한도)</li> <li>- 장비구입 등 창업자의 자산취득비용은 불인정</li> </ul>
	간접 사업비 (30% 이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시회 참가비, 제품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, 사무용품 등 운영비</li> </ul>

### <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조성 >

구분	창업자 초기사업비 조성(100%)	
조성비율	정부지원금	창업자 부담금
	70% 이하 * 제조업: 최대 30백만원 * 비제조업: 최대 15백만원	현금 30% 이상

\*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시 창업자 초기사업비 한도를 달리할 수 있음.